

부산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54545(본소), 2021나5455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공사대금]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54545(본소), 2021나54552(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소123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6.

판결선고 2022. 5.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소1239(본소), 2020
가소3761(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정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주지스님이고, 피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2)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찰의 법당 불단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주고받거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7. 21. 2,000,000원, 2016. 7. 24. 1,000,000원, 2016. 7. 25.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찰의 개원일 무렵에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4) 피고는 총 공사대금이 8,000,000원인데 그중 5,5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당초 공사대금은 4,0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추가로 1,500,000원을 요구하여 위 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모두 완납되었다며 다투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는 불단의 못 구멍 자국을 막지 않았고, 불단에 설치된 문짝 17개가 180도로 열려야 하는데 90도밖에 열리지 않는 하자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
- 2) 원고는 2019. 11. 21.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F에게 위 하자보수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견적은 1,500,000원이다.
-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설치한 불단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역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